

#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83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서윤기, 김경우, 김기대,  
김제리, 김태수, 송명화,  
송재혁, 유정희, 이상훈,  
이준형, 임종국, 장상기,  
전석기, 홍성룡, 황규복  
의원(15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학교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.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에 따라 학교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최고한도는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내 교육공간 확보,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2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최고한도는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(안 제21조의2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학교의 부설주차장 설치한도)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 
(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한 시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제1호에  
따른 사립학교 가운데 교육감의 지도·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를 포함한다)  
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최고한도는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  
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21조의2(학교의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)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(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한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가운데 교육감의 지도·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최고한도는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한다.</u></p>